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확대 필요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전략 즉, “사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강화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협력에 있다.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획권역은 명칭, 목표, 수준은 서로 달라도 지역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대체로 볼 때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및 역할 등을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둘 이상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협력도 포함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사업(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과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중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정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인해 왔다. 이미 2010년과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경우 시·도의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세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두 차례
중 12개 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광특

은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1일 제정된 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후방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은 사업준비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확정하고, 2011년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편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서남해안 인접 시군,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48억원 (6개, 신규 1개)	215억원 (9개, 신규 3개)	광역계정
계	607억원 (35개)	1,231억원 (62개)	1,488억원 (67+ 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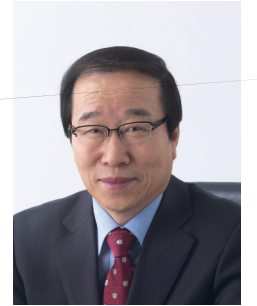
정부와 자치단체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형성에 이르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경우 주요 합의사항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력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협약을 체결한 연계협력사업이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 관계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공동추진기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며, 이미 선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용이 수월한 대안이다. 또한 관련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계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실무적으로 추진할 지방공기업, 사업단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에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의 Interreg IV와 같은 제도적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 태 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내 20여개의 광역협력 사무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